

『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4단지 외국인투자지역(부품소재전용공단) 부지 매입은 4단지 내
외국의 첨단 부품소재 및 고도기술수반 사업의 유치를 위하여
지식경제부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외국인투자지역(부품소재전용
공단)으로 지정함에 따라 매입하여 구미경제에 제2의 구미공단
발전 및 대일무역 역조해소, 부품소재진흥,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인
효과를 도모하고자 함
- 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은 금호연지의 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하고
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과 시민들의 친환경쉼터를
겸한 가족단위 생태체험학습의 장으로 조성하고자 금호연지생태
공원 조성 관련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
- 인동동 청사 건립예정지 및 냉산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예정지와
(주)LS전선 안양공장 구미이전과 관련한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립
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유지를 교환하여 공공시설용지 확보 및
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】

☐ 구미시 외국인 투자지역(부품소재전용공단) 부지매입

- 토 지 : 4필지 31,933.62m²(255,469m²중 12.5%)
- 기준가격 : 4,733,522천원(총금액 37,868,170천원의 12.5%)

☐ 금호연지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

- 토 지 : 3필지 2,237m²
- 기준가격 : 252,781천원(가감정가 기준)

☐ 인동동청사 및 냉산 산악레포츠 공원 조성부지(교환)

- 토 지 : 2필지 51,572m²
- 기준가격 : 825,533천원(가감정가 기준)

【 처분재산 】

☐ (주)LS전선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립 부지(교환)

- 토 지 : 2필지 42,417m²
- 기준가격 : 890,757천원(가감정가 기준)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5. 검토의견

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써 취득 3건 처분 1건 임
- 구미시 외국인 투자지역(부품소재전용공단) 부지매입 건은
 - 구미국가산업단지제4단지 2-1-1B 외 3필지의 산업시설공장용지 31,933.62㎡(가감정가 4,733,522천원)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임
 - 본건은 부품소재진흥사업, 일자리창출 등 구미공단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
- 금오연지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은
 -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104번지 외 2필지의 2,237㎡(가감정가 252,781천원)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
 - 본건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가족단위 체험학습장의 활용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,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수렴과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
- (주)LS전선 기숙사 건립부지 교환건은
 - 시유림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 5-47번지 외 1필지 42,417㎡(가감정가 890,757천원)를 처분하고,

- 구미시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51,572m²(가감정가 825,533천원)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임
- 본건은 (주)LS전선 기업체의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시유림과 사유지를 교환코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
- 교환재산으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등 문제점은 없는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